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16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4
나. 제정 필요성	5
2. 조문별 검토	10
가. 목적 및 기본이념 등(안 제1조·제2조·제4조·제5조)	10
나. 정의(안 제3조)	13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6조)	18
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주관기관 및 총괄기관 등(안 제7조)	19
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8조 및 제9조)	22

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안 제10조)	25
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평가(안 제11조)	28
아.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안 제12조)	30
자.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안 제13조·제14조·제15조)	34
차. 업무의 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16조·제17조) ...	36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승원의원 등 31인

나. 제 출 일 : 2025. 12. 24.

다. 회부연월일 : 2026.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디어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지는 동시에,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유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등 그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인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교육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이나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처럼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미디어를 주체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활용능력, 이해·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3조).
- 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관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주관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바.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의 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과 연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수업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이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증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방송 등에서 제작·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미디어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법안의 조문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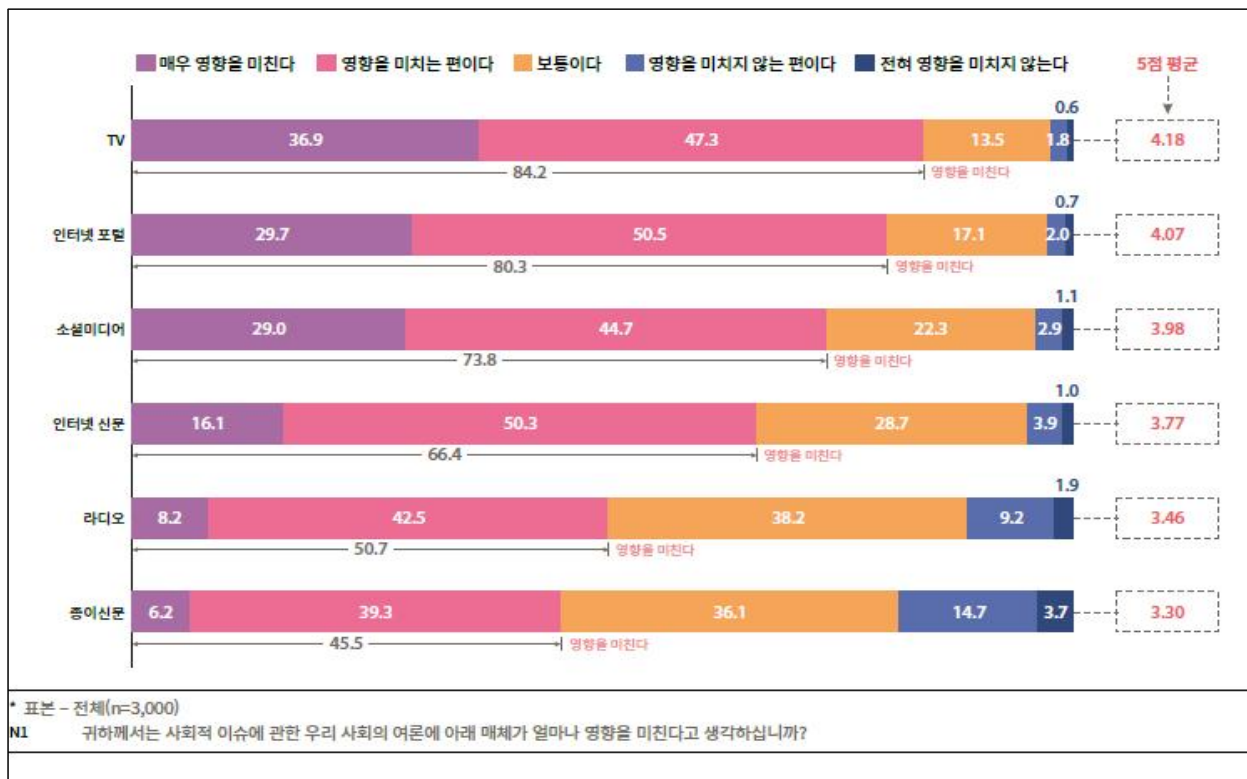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목적	제11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평가
제2조 기본이념	제12조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3조 정의	제13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4조 국민의 권리	제14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5조 국가등의 책무	제15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 업무의 위탁
제7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주관기관 및 총괄기관 등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시행일 : 공포 후 1년	

나. 제정 필요성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확장됨에 따라 정보의 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디어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포털, 소셜미디어, 인터넷신문 등 뉴미디어 매체의 영향력이 TV의 영향력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소셜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음.¹⁾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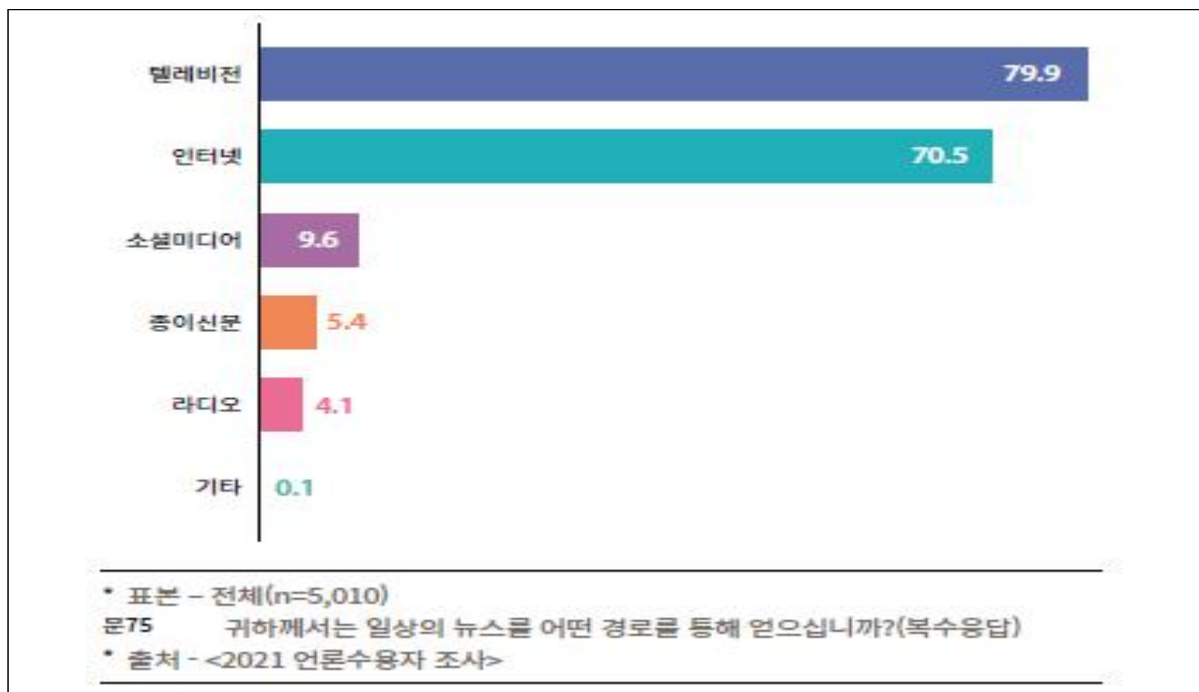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1)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p.57

아울러,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 중 인터넷 포털,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신문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뉴스를 주로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있는²⁾ 한편,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불편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86.7%가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주요 뉴스에 대한 진위 여부를 측정한 결과 평균 정답률은 51.7%인³⁾ 것으로 나타나는 등 허위 및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⁴⁾

<일상의 뉴스를 얻는 매체>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p.26

3)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불편비용 추정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제17권 제1호, 이미숙·전형익, 2022, p.161

4)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p.84

다만, 관련 논문⁵⁾들에 따르면, 미디어 리터러시⁶⁾ 교육을 통해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역량 요인을 성장시킬 수 있고, 교육 효과는 아동·청소년기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이나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부처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

구분	중점 분야	사업 내용
문화부	뉴스, 영화, 방송,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 및 콘텐츠의 진흥 및 교육 주관	(프로그램) ▲뉴스 : 초·중·고 강사 파견, 대학강좌 개설, 홍보 캠페인 등 ▲방송·게임·영화·웹툰 등 : 이용자 교육 및 체험 등 (인프라)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미디어교육원(1개소) 등
방미통위	장비와 시설 바탕으로 미디어 제작 중심 교육 특화	(프로그램) 유·초·중·고교, 대학, 사회시설, 방송사 강의 지원 등 (인프라)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제도, 시청자미디어센터(12개소) 등
교육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미디어교육 추진	(프로그램) 교사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학생 디지털 미디어 캠프 등 (인프라) 학교미디어교육센터(3개소) 등
과기부	디지털 기기 활용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인프라)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배움터 운영 등(디지털 역량, 과의존 예방 등)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5) “핵심역량 중심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 구성 및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67권 제2호, 박윤미, 나은영

6) 소셜미디어에서 미디어 텍스트를 이해, 활용, 공유,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함.

이처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참고로, 제18대 국회부터 제22대 국회까지 총 10건의 미디어교육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

< 미디어교육 관련 제정 법률 발의 현황 >

구분	대표발의	법안 소관 상임위	미디어교육 심의위원회		미디어교육 주관기관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소속	위원장		
22대	박수현 '25.9.	문체위	문체부 (25명 이내)	문체부장관, 위촉위원 중 호선 공동	문체위	3년 (문체부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이훈기 '25.2.	과방위	방미통위 (18명 이내)	방미통위원장, 위촉위원 중 호선 위원 공동	방미통위	3년 (방미통위가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의 의견 들어 수립)
21대	정경희 '22.11.	교육위	사회부총리 (25명 이내)	사회부총리	교육부, 문체부, 방미통위 공동 (분야 구분)	5년 (주관기관이 위원회 심의 거쳐 수립)
	권인숙 '21.7.	교육위	사회부총리 (25명 이내)	사회부총리	교육부, 문체부, 방미통위 공동	5년 (주관기관 공동으로 위원회 심의 거쳐 수립)
	정필모 '20.8.	과방위	방미통위 (18명 이내)	방미통위원장, 위촉위원 중 호선 위원 공동	방미통위	5년 (위원회에서 특별시장 등 의견 들어 수립)
20대	신경민 '18.5.	과방위	방미통위 (11명 이내)	방미통위원장이 방미통위 상임위원 중 위촉	방미통위	5년 (방미통위에서 교육부, 문체부 협의해서 수립)
	유은혜 '18.5.	문체위	국무총리 (25명 이내)	위촉위원 중 호선	교육부, 문체부, 방미통위	5년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계획 수립 후 위원회에서 종합)

구분	대표발의	법안 소관 상임위	미디어교육 심의위원회		미디어교육 주관기관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소속	위원장		
19대	김희정 '13.9.	과방위	-	-	문체부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총괄)	5년 (문체부가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수립)
	최민희 '12.8.	과방위	방미통위, 교과부 (15명 이내)	위원회 호선 후 방미통위가 교과부와 협의하여 임명	방미통위 (교과부 협의)	5년 (방미통위가 교과부와 협의하여 수립)
18대	이경숙 '07.4.	문광위	문체부 (9명 이내, 자문위원회)	위원 중 문체부장관 위촉	문체부	5년 (문체부가 수립)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기본이념 등(안 제1조·제2조·제4조·제5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미디어를 주체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국민이 미디어의 기능과 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들이 생성되는 과정이나 내용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국가등의 책무 등) ① 국가등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하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미디어 관련 사업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은 제명(題名)에서 알 수 있듯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법률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차적으로 국민이 미디어를 주체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는 제정안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는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이 미디어의 기능과 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아울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정치적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중립성을 추구하고 있음.

제정안 제4조는 국민이 차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5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 국가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층(이하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기본이념 제시를 통해 각 기관이 추진 중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기본이념에서 정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일반 국민에게도 각 기관이 일관된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증진에 대한 국가와 미디어 관련 사업자의 책무를 법률로 규정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증진 정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나. 정의(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미디어</u>”란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뉴스통신</u>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u>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u>인터넷신문</u>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u>인터넷뉴스서비스</u> 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정기간행물</u> 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u>비디오물</u> 및 같은 조 제12호의2에 따른 <u>온라인비디오물</u> 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게임물</u> 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용자가 직접 생성하거나 선택한 정보(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공유·소통할 수 있게 하는 <u>정보통신서비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u> 자. 그 밖에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u>미디어 리터러시 교육</u>”이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활용능력, 이해·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u>시행기관</u>”이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도 교

제 정 안
육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u>미디어 관련 사업자</u>”란 방송·통신 등을 포함한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콘텐츠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정안 제3조는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미디어”의 정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미디어”를 각기 다른 부처 소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체 등을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음.

소관 부처	법률명	해당 매체
문화체육관광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⁷⁾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⁹⁾	정기간행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¹⁰⁾	영화, 비디오물, 온라인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¹¹⁾	게임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¹²⁾	정보통신서비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법 ¹³⁾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¹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無線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잡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 나. 정보간행물: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다. 전자간행물: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 라. 기타간행물: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법률의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제정안은 제7조15)에서 국무총리를 총괄기관으로 주관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관기관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섞여 있는 테마파크시설은 제외한다.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섞여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3)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1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제7조(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주관기관 및 총괄기관 등) ① 이 법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및 시행기관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통해 미디어와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방식을 모두 하나의 개념 아래 아우를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정의 규정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 제6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제정안이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규정하며, 다른 법률 사이의 해석 및 집행상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타 법률과의 관계를 정립하여 제정안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는 입장임.

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주관기관 및 총괄기관 등(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주관기관 및 총괄기관 등) ① 이 법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2조는 “미디어”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기관” 등을 정의하고 있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정안이 “미디어”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무총리”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총괄기관으로 정하여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제정안 제12조16)에서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초·중등

1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제12조(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①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법」 제23조17)에 따른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은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하고 있어, 주관기관 또는 시행기관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총리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업무를 총괄·지원함으로써 범정부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의하는 입장임.

한편, 국무조정실은 안 제7조제2항에서 국무총리로 규정되어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총괄기관을, 실질적 집행기능이 있으며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주무부처의 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합리적 사고능력 및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수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과 연계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7)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관련 주무 부처로서 그 주관 하에 미디어 교육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및 발표하였고¹⁸⁾,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미디어에 관한 교육 및 체험 등의 사업을 수행 중인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교육의 주관부처로서 정책을 총괄하고, 관계부처가 근거 법률에 따라 소관을 명확히 하고 부처간 협력하는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8)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20.8월) 및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4.3월) 발표

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8조 및 제9조)

제 정 안
제8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u>국무총리</u>는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u>(이하 “<u>기본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방향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교육과정·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취약계층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 6. 거짓정보 또는 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 7.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1. 시행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과 관련하여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9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u>주관기관의 장</u>은 기본 계획에 따라 <u>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계획</u>(이하 “<u>시행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8조 및 제9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과 이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8조제1항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국무총리가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교육행정은 시·도교육감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3조제3호¹⁹⁾에 따른 “시행기관”의 의견도 함께 듣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제정안 제9조제1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계획

19)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시행기관”이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수립을 위해 수립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범정부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이 기대되나, 예산 및 사업 등의 집행기능이 없는 국무총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국무조정실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국무조정실은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무총리로 규정되어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주체를, 실질적 집행기능이 있으며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주무 부처의 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방송 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등 미디어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변하고 있어 기본계획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안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평가지침 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소관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의견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⑥ 위원회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소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0조제1항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제정안 제10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간사위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관 분야와 관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장관급 공무원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실의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업 관계를 마련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이 기대되나, 예산 및 사업 등의 집행기능이 없는 국무총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국무조정실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무조정실은 안 제10조제1항에 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위원회를,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련 주무부처 소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안 제4항제1호 및 제5항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의 위원은 주무부처의 차관급으로 직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간사위원은 실무 담당 역할로 소관 업무의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내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안 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여야 추천 합의제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교육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평가(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평가) ① <u>국무총리</u>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u>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평가지침</u>을 <u>마련</u>하여야 한다. ② <u>주관기관의 장</u>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u>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u>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u>국무총리</u>는 필요한 경우 <u>평가단</u>을 구성하여 <u>시행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u>할 수 있다. ④ <u>국무총리</u>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u>평가 결과</u>를 <u>공개</u>하고, <u>국회에 제출</u>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의 구체적 내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의 대상·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1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국무총리로 하여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평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며, 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안 제8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고, 평가지침의 마련과 평가 결과의 공개, 기본계획 수립에의 반

영 등의 주체 또한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의 조문 간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이 정책 목적과 사업 목표에 비추어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한편 국무조정실은 안 제11조제1항에서 국무총리로 규정되어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평가의 주체를, 실질적 집행기능이 있으며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주무부처의 장(문화체육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① <u>국가교육위원회</u> 및 <u>교육감</u>은 <u>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u>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u>교육과정</u>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u>교육부장관</u> 및 <u>교육감</u>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u>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계획</u>을 <u>수립·시행</u>하여야 한다. ③ <u>학교의 장</u>은 학생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합리적 사고능력 및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u>교육과정</u>을 운영할 때 <u>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수업에 활용</u>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과 연계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12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교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릴 때 시행할수록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²⁰⁾가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될 것으로 예상됨.

20) 국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Vol 28, 김혜준, 박하나, 정성희, 임규연, p.119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반영하고 국가 등의 지원을 규정하여 국가 차원의 균일하고 일관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동의하는 입장임.

한편, 교육부는 안 제12조제1항에 대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이미 디지털 소양을 기초소양으로 명시해 교과별 교육과정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²¹⁾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정·변경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2조제2항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교육부장관 등 주관기관의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²²⁾에서 「초·중등

2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2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기관

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외에도 유치원, 평생교육시설의 장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실시의 주체로 포함하고 있어 근거 법령의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12조제3항과 관련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을 지나치게 한정하여 제시한바, 이에 대한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안 제12조제4항에 대하여는 안 제5조에서 국가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관련 교과목의 성취기준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반영하였고, 이미 범교과 학습과 연계하여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²³⁾, 「교육기본법」 제22조의5²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²⁵⁾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 2. 제2조제1호라목의 교육기관 중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3. 제2조제1호마목의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23)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4)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 과정의 수립 및 변경이 필요하고, 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²⁶⁾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자.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안 제13조·제14조·제15조)

제 정 안
제13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u>주관기관</u> 및 <u>시행기관</u>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u>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u>을 위하여 <u>교원과 전문강사</u> 등 각 <u>인력 유형별 양성 체계를 구축</u>하고 이를 <u>종합적으로 지원</u>하여야 한다.
제14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u>주관기관</u> 및 <u>시행기관</u>은 국민에게 양질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u>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u>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u>주관기관</u> 및 <u>시행기관</u>은 소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u>전문기관</u>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u>민간단체</u>에 <u>행정적·재정적 지원</u>을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u>협의체의 구성·운영</u>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안 제13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안 제14조), 관련 교육 전문기관과 교육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5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에서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 대상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타 입법례²⁷⁾를 참고하여 “전담기관의 지정”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교육 지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한편, 교육부는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교원연수 지원으로 수정하고, 교원 자격은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내용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7)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추진하는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차. 업무의 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16조·제17조)

제 정 안
제16조(업무의 위탁) <u>국무총리</u> 및 <u>주관기관</u> 은 이 법에 따른 <u>업무의 일부</u>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u>전문기관</u> 또는 <u>민간단체</u> 에 <u>위탁</u> 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 제16조 및 제17조는 국무총리 및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²⁸⁾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²⁹⁾

28)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9)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국무총리 및 주관기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할 수 있고, 위탁 업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함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공정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80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